

불 통의 모든 명칭은

'국가인권위 바로 시위자!' 인권단체 명칭들을 바꾸었다.

(가칭) 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자리집~~

때 : 2001년 7월 19일(목) 오전 11시

곳 :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강당

주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지촌여성과아이들의쉼터'새움터'/
 노동인권회관/노동장애인야학/다산인권센터/
 패자보/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의료연합/부산인권센터/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새사회연대/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센터/장애인의꿈너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군폭력희생자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평화·참조질서보전을위한기독사회시민연대/
 제주인권지기/중고등학생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참관:

불교인권위원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인권위원회

(가칭)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자료집

- 3. 대회사
- 4. 결성경과보고
- 6. 인권현안보고
- 8. 사업계획
- 10. 창립선언문
- 12. 규약
- 15. 조직구성도
- 16. 참가단체 주소록

대회사

'인권'을 향한 민중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하고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외침에 불려나왔습니다. 오늘 창립하는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는 국가인권위의 자리 매김을 철저히 감시하고 독려하려는 인권단체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이 겪어온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올바른 국가인권위법 제정을 위해 쉽지가 달려온 기간이었습니다. 피약별과 폭설 속에서 가진 두 차례 단식 농성을 비롯해 때론 연구와 토론으로, 때론 시위와 캠페인으로, 때론 로비와 홍보로, 법무부의 인권위 장악 야욕과 정치권의 잇속 챙기기를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은 군데군데 흠집과 구멍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규명과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무시하지 못할 '창구'가 국가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올 11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기까지 겪어야 할 산고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을 적극적이며 전향적으로 해석해야 할 '시행령' 작업과 국가인권위의 활동력을 좌우할 '인물' 선정 작업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이해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편승하려는 인물들의 몰밑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울 것이며, 국가인권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어르신들과 인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많은 민중에게 썩은 동아줄이 아닌 굵고 튼튼한 동아줄을 내밀 수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꿈을 함께 합시다.

2001. 7. 19

(가칭)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김광수

(가칭)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건설 경과보고

- 4/30 「국가인권위원회법」 찬성 137, 반대 130^{기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김대중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 5/23 김대중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에 서명
- 5/24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
다산인권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를 위한 1차 공개세미나 개최
- 5/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미흡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 데 항의하여 해산
- 6/1 인권활동가를 위한 2차 공개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요(발제: 광노현 교수)
인권활동가 간담회, 국가인권위 설립에 대응하는 연대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
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준식 대표, 송원찬 소장에 기획안 요구
- 6/8 인권활동가를 위한 3차 공개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축조해설1(발제: 광노현 교수)
서준식 대표/송원찬 소장, 연대기구에 대한 발제 및 지정토론
국가인권위에 대처하는 연대기구 설립에는 동의, 조직 형태에서 이전 존재(상설기구/한시
기구)
- 6/15 인권활동가를 위한 4차 공개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축조해설2(발제: 광노현 교수)
인권활동가 간담회, 상설 연대기구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었으나 건설 경로나 위상 등에 대
한 이견이 표출되어 결론을 내지 못함
- 6/22 인권활동가를 위한 5차 공개세미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건설과 운영의 교훈(발제: 정영선 전문위원,

이은경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국장)

6/30 다산인권센터 등 21개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준)을 결성하고 다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팀에 참가단체 확대, 조직 구성, 사업기획, 창립대회 준비 등을 위임

7/5 준비팀 1차 회의,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소장을 준비팀장으로 선출
참가단체 현황 점검, 기획안(조직/사업계획/홍보) 분담, 창립대회 준비 일정표 작성

7/10 준비팀 2차 회의, 3개 기획안 검토 및 창립대회 일시와 장소 확정

7/12 인권협(준) 소식지(뉴스레터) 1호 발행

7/13 2차 집행책임자 회의, 창립대회 준비 작업 점검

7/16 인권협(준) 소식지(뉴스레터) 2호 발행

7/19 오전 10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등 30개 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4개 참
관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아래 인권협) 대표
자회의 개최
'박영두사건'에 대한 긴급 결의안 채택

인권현안 종합보고 - 3대 긴급현안 중심으로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탄압

- 현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98년 465명을 정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126명이 구속 수감.

올 6월, 단국가활동가대오,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등으로 구속자 급증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인터넷 상의 검열과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국가 권력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음.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아래 망법) 시행령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관철수단 확보.

지난 6월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망법과 통신기반보호법은 온라인 시위를 혹독하게(각각 징역 5년, 10년 이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한 내용(발언/출판/영상물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본격화. 김○○ 교사의 누드사진을 담은 홈페이지 폐쇄, 동성애 사이트 폐쇄, 병역거부 사이트 수사 등

-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

올 상반기 화염병 투척사범 47명 구속(2000년 전체 구속자 11명)

7. 1 경찰,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화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7. 3 경찰, 집회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약 25분간 더 집회를 한 혐의로 전교조 교사 7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

7. 5 경찰,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검토(4대문 안 500명 이하, 도심 1000명 이하)

2. 생존권 탄압 가속화

- 사용자 불법 행위는 묵인, 노동자 불법은 무조건 구속

7. 3 정부, 민노총 2차 연대파업에 강력 대응 천명

7. 4 은 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여천NCC 파업 때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뒤로 하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최성민 32명 구속
부당노동행위

7.12 김철준(42) 변호사, 태미콘 노조 인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3. 과거청산, 낡은 사법제도의 틀에 갇혀 신음

-박영두 사건, 교도관의 고문에 의한 사망 그리고 교도소와 검경이 망라된 은폐 공작, 진실이 규명된 지금은 처벌 수단 부재

(대표자회의, 박영두 사건에 대한 긴급 결의안 채택/ 별지 참조)

-의문사진상규명위, 법 개정 청원

위원회의 취약한 권한과 짧은 조사기한 등 관련 조항 개정 요구

인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안)

1. 인권위원장, 인원위원 및 사무총장 인선에 비판적 참여

- 인선 기준 제시, 투명한 인선 요구
- 인선된 위원 등 검증, 반인권전력자 반대

2. 시행령 제정활동(연구팀 주요활동)

- 인력과 예산, 면전 진정 절차 등 주요 사안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 과정 감시, 비판
- 자체 시행령(안)을 만들어 요구

3.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서 제작, 배포 및 교육

- 인권활동가 등, 국가인권위 활용 지침
- 내부워크샵과 순회교육
- 대중적 매뉴얼 제작, 배포

4. 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용

- 내부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홍보, 부정기 발행
- 홈페이지는 간단한 단체 소개, 게시판 정도로 간편하게 제작

5. 내부워크샵 진행

1)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도모
- 참여단체들의 공유 및 결속 강화
- 그룹별(예, 소수자, 사회권, 자유권등), 향후 과제 모색

2) 일정 - 8월말(1박2일)

3) 참여대상 - 각 참여단체 관계자 및 기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4) 형식 - 워크샵(참가단체의 그룹별 논의가 가능하도록)

5)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해/ 시행령 초안 검토/ 개별 단체별로 예측 가능한 사례발굴

6. 전국 광역단위별 순회교육

1) 목적

- 전국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이해와 대응 모색
- 서울과 상충중심의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
- 이후 지역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용방식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계기 마련

2) 주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3)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해/ 현상황과 지역차원의 대응준비

4) 일정 - 9월부터 11월까지

5) 형식

- 광역별로 나누어 진행(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울산, 제주, 춘천, 수원등)
- 연대 기구 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3-4(곽노현, 서준식등)인을 확보해서 파견
- 가능한 연대체가 주축, 지역인권관련단체나 연대가 가능한 단체연합 주관 형식
- 국가인권위원회와 직간접적 관련있는 단체 조직
- 세부적 형식은 워크샵이나 강연등 지역상황에 맞게 진행

(가칭)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선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우리 인권 단체들은 막중한 책무를 절감한다.

새로운 법과 제도의 탄생은 언제나 그 자체로서 새로운 세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치 혹독한 단련을 거친 후에 날랜 강철이 탄생하듯 새로운 제도가 명시적 목적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제도로서 확립되기 위하여 그것은 깨어 있는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냉철한 비판 아래 놓여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시와 비판의 임무가 일차적으로 인권단체의 몫임을 분명히 자각한다. 우리는 오로지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이 국가기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법소와 병권을 버리고~~ 이제 진지한 감시와 비판의 길로 나서고자 한다.

올바른 국가인권위법을 쟁취하기 위해 3년여 동안 흘렸던 우리의 피와 땀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의 실제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현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통과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 단체, 언론도 이를 명시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을 빌어 그것이 진정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시민단체가 환영하는 인권위법”이냐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늘도 여전히 “아니다!”이다. 깊은 실망과 고통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아픈 과정을 거치고 난 지금, 결국 우리는 우리가 그 “아니다!”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현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물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치명적 결함을 가진 함량미달의 법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내 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한 장의 청원서를 쓰기 위하여 피 마르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 교도소 채소자들이 현실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을 찾을 길 없는 인권 피해자들에게 감히 “국가인권위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강심장이 우리에게 없는 까닭이다.

힘없는 국민의 크나큰 희망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 그것은 결코 ‘인권’의 간판을 내건 사기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로새우자' 인권단체에게하기

오늘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를 창립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우리의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다. 우선 제도의 결함을 인권의식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인권위원의 선임은 국가인권위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는 현재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위원 선정과정이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감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법 요소 요소에 공허하게 뿔린

구명을 매워주는 효과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최대노력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인권위법 입법과정에서 발휘했던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구시대의 기득권세력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끈질기고도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오늘 우리의 인권상황은 참담하다. 공권력의 횡포 앞에 끝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극성스러운 탄압과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완벽하게 봉쇄하려는 공권력의 무모한 횡포는,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을 웅변하는 자화상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이,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박살날 것을 희망한다. 그런 쓸모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뿌리를 내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한다. 그런 쓸모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겪어보지 못한 실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지 않다. 국가인권위와 인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엄숙한 명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는
두렵지

우리의 요구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도 민주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선임하라.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정하라.

2001년 7월 19일
(가칭)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회는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약칭 “인권협”)라 부른다.

제2조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과 보호 기관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인선 과정 감시
2. 시행령 제정 과정에 비판적 참여
3. 직원 인선 과정 감시
4. 국가인권위법에 대한 해설서 제작·배포 등 국민교육
5. 기타 긴급한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권 관련 민간단체는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 단체는 본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고 발언하며 의결에 참가할 권리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참관 단체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탈퇴) 회원단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대표자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징계) 회원단체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약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14조 (보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5장 부칙

제15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양해사항

회칙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회원단체들 서로 간에 다음 사항을 양해한다.

1. 공동사무국은 잠정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 둔다.
2. 재정은 창립대회 전후 10만원을 일괄 납부하며,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정치조직(정당 또는 그 유사단체)은 회원단체로 받지 않는다.
4. 상임공동대표단 직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고난받는아들과함께하는모임(대표 박이섭) Tel 02-393-4662 Fax 02-364-6076

E-mail: gonan@chollian.net

기지촌여성과아이들의쉼터'새움터'(대표 김현선) Tel 031-867-4655 Fax 031-867-3031

E-mail: swoom@chollian.net

노동인권회관(소장 박석운) Tel 02-749-6052 Fax 02-749-6055

E-mail: A0011@chollian.net

노들장애인아학(교장 박경석) Tel 02-766-9091

E-mail: master@nodl.or.kr

다산인권센터(소장 송원찬) Tel 031-213-2105 Fax 031-215-4395

E-mail: humandasan@hanmail.net

대자보(대표 이창은) Tel/Fax 02-2265 - 9446

E-mail: web@jabo.co.kr

문화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도정일) Tel 02-773-7707 Fax 02-737-3837

E-mail: acc21@chollian.net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종서) Tel 042-520-5599

E-mail: delsa@delsa.or.kr

민중의료연합(대표 이세연) Tel 02-774-8774 Fax 02-774-8773

E-mail: gunsay@jinbo.net

부산인권센터(사무국장 이광영) Tel 051-803-2880 Fax 051-803-4526

E-mail: phrights@nownuri.net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대표 김진균) Tel 02-778-4001 Fax 02-778-4006

E-mail: pssp@jinbo.net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 Tel 02-925-0062 Fax 02-924-0062

주소록

E-mail: ipeck@ipeck.or.kr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소장 김동춘) Tel 02-2610-4236 Fax 02-2610-4133

E-mail: tothemoon@mail.skhu.ac.kr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최의팔) Tel 02-747-6830 Fax 02-747-6832

E-mail: jcmk@jinbo.net

울산인권운동연대(대표 최민식) Tel 052-242-1119 Fax 052-242-1120

E-mail: ulsanhr@ulsanhr.jinbo.net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재민주연대(공동대표 이해동) Tel 02-3675-5808 Fax 02-3673-5627

E-mail: khis21@hotmail.com

인권실천시민연대(운영위원장 최용철) Tel 031-867-4655 Fax 031-867-3031

E-mail: hrights@chollian.net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Tel 02-741-5363 Fax 02-741-5364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정일웅) Tel 02-766-6024 Fax 02-766-6025

E-mail: webmaster@humanmed.org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센터(대표 윤영규) Tel 062-374-7805 Fax 062-527-5734

E-mail: kas0102@hanmail.net

장애인의꿈너머(대표 최민) Tel 02-826-0342

E-mail: rhwls21@hanmail.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Tel 02-675-6181 Fax 02-675-6184

<http://eduhope.net/>

전국군폭력희생자가족협의회(회장 이해숙) Tel 011-225-9877

E-mail: deskpro@netsgo.com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공동대표 김광수) Tel 02-762-8478 Fax 02-747-3385
E-mail: ccjp@chollian.net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Tel 02-764-1684 Fax 02-743-2835
E-mail: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 Tel 063-233-9331 Fax 063-231-9332
E-mail: onespark@chollian.net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을위한가독사회시민연대(운영위원장 김동한) Tel 02-704-9385
Fax 02-747-3385 E-mail: caonet@chollian.net

제주인권지기(대표 김상근) Tel 064-702-5250 Fax 064-702-5251
E-mail: rightscj@hanmail.net

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근) Tel 02-755-8025
E-mail: union10@mizy.net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Tel 02-7744-551 Fax 02-7744-553
E-mail: orpheo@www.jinbo.net

평화인권연대(담당 손상열) Tel 02-851-9086 Fax 02-851-9087
E-mail: peace@jinbo.net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대표 이금연) Tel 031-444-2876 Fax 031-446-2876
E-mail: migrantswomen@hanmail.net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사무국장 박철민) Tel 02-744-7916
E-mail: chingusai@chingusai.net

공개서한

수신자: 김대중 대통령 / 이만섭 국회의장 및 각 정당 총재 (대표) / 최종영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단체로서 우리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인권위원회가 올바르게 뼈대를 이루기 위하여 인권위원의 선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특히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법이기에 더욱 이 결함을 보완해 나가야 할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과 균형감각 그리고 올곧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힘없는 국민의 큰 희망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 그것이 결코 '인권'의 간판을 내건 사기극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33개 인권단체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정을 위한 우리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 인권위원 선정과정은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인권위원 선정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지금, 국민은 그 선정과정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특징짓는 오랜 악습, 즉 '밀실정치'와 '밀실행정'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새 시대를 맞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정치권과 국가기관들 사이의 '나눠먹기' 식 인선은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인권위원 선정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둘째 원칙: 인권에 대한 식견과 높은 인권의식은 필수적입니다

인권위원의 임무는 그저 인권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태생적으로 지닌 치명적 결함은 인권위원들의 식견과 높은 인권의식에 의해서만이 극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권이 국경을 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위원의 식견에는 국제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분야의 전문가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칙: 권위주의 시대 인권을 탄압했거나 부정·부패의 과거가 있는 인사를 거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에 군인, 경찰관, 검사, 판사를 지낸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암담했던 권위주의 시대, 반 인권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던 그 시대에 통치기구의 한 톱니바퀴로서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까닭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한 인권단체가 인권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교수, 변호사, 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70-90%)가 군인, 판사, 경찰관, 검사 출신의 인권위원(장)을 거부하고 있음을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권위원 선정과정을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2001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긴급 결의문

정부는 청송 제1보호감호소 교도관들의 박영두 타살사건 및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지난 6월 25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당시 청송 제1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영두가 여러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1980년 8월 경상남도 충무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대하게 된 박영두는 일방적인 보호감호처분에 항의하여 정식 재판을 요구하다가 군법회의에서 10년형을 선고 받고 청송 제1감호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청송 제1감호소에서도 계속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결국 7-8명의 교도관으로부터 처참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하였다.

우리 인권운동가들은 이 공권력에 의한 잔인무도한 살인사건의 진상을 접하면서 17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캐내지 못했던 우리의 인권운동을 부끄럽게 돌아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 사항들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가해자들에 대하여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박영두를 직접 타살한 교도관들은 이잠술, 박수호, 김의식, 김명겸 등 7-8명이 다. 과테말라로 이민 가버린 이잠술, 사망한 박수호를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근무하는 김의식과 청송 제2교도소에 근무하는 김명겸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법무부가 파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우리는 법무부가 성실한 자체조사를 통해 이 살인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간여한 모든 공무원의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파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정부가 이 범죄의 은폐에 가담했던 모든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살인사건이 17년 동안이나 어둠에 묻혀 있었던 이유는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무부에 대해 당시 김명식 청송교도소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을 비롯한 교도관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의성지청 소속 최복성 검사를 비롯한 관련 검사들에 의한 조직적 은폐의 전모를 밝히고 그 각각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3.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가해자 김의식, 김명겸 등이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음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현실을 직시하여 이들 및 살인과 은폐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가 하루 속히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조약' (1968)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4.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청송감호소를 폐쇄하라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는 5·18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그 폭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반인권적 제도였다. 20년에 이르는 청송 교도소 및 감호소의 역사는 범죄자의 교화·사회복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공무원의 폭력이 난무하는 반인권범죄의 역사 그 자체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악한 사회에서 결국 우리 모두의 악과 비겁함이 생산해내는 '범죄자'를 영원히 매장해버리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보호감호제도의 철폐작업에 착수하라.

2001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서울 중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741-5363, 전승.741-5364, 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시민사회연대/ 기지촌여성과아이들의쉼터 ‘새움터’/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아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의료연합/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군포력회생자가족협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자)

2001. 7. 31

발신: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원찬, 011-750-3455)

취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공개 추천 기자회견 ‘인권단체는 이런 인권위원을 원한다’

때 : 2001. 8. 1 (수) 이른 11시

곳 : 안국동 ‘컬렉타당 느티나무’ (참여연대 건물 2층)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인권단체연대회의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인사 명단 공개 (추천 기준, 이유, 약력 소개 등)
3. 향후 계획 발표
4. 인권위원 인선 작업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 발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설립 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 19일에 창립되었으며, 34개의 인권 및 인권관련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설립을 앞두고 정부·여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준비가 첫판부터 우리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특히 최초로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인권위원회의 골격을 만드는 중차대한 임무를 짊어지게 될 위원장 및 위원들의 인선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며, 그 작업은 사실상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 인권단체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월 19일 밀실 인선을 비판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인권위원회 설립을 향한 제 2단계 활동으로서 한국 인권운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공개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추천된 분들이 실제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부디 인권단체가 선정한 인권위원 후보들이 발표되는 이 뜻깊은 자리를 취재, 널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3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결의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선 과정을 공개하고 공론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법을 공포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 명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성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이라곤 '인권위원장이 내정되었다', '여당이 국가인권위 준비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정도이다. 언론보도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인권위원이 모여 시행령을 만들고 직원 인선을 완료하기에 11월 25일이라는 출범시한은 지나치게 빠듯하다. 인권위원 밀실 흥정 논란을 접어둔다 해도 인권위원회 구성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지난 3년, 인권운동가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 앞에 주어진 법은 곳곳에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빈 껍데기였다. 이 법은 인권운동가들이 보기에 분명히 미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을 '쓰레기'라 부르지 않았다. 진정서 한 장을 쓰기 위해 피달리는 고통을 감내하는 재소자들이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미흡한 법을 보완할 것은 사람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인선하는지, 인선 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탄압의 역사를 반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국가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다. 국가 기구 안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경보를 울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적 국가기구에 서슴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식견이 풍부하고 올곧은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이 미흡한 경우, 사람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기준인 '파리원칙'은 위원 선정에 있어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된 인사들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월 19일, 창립대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밀실 인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선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대통령, 여야대표, 대법원장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우리는 2단계 행동으로 인권위원을 공개 추천함과 아울러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인권위원 인선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비민주적인 밀실 인선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창립대회에서도 명백히 밝혔듯 우리는 제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구성될 국가인권기구가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로 뿌리내리길 바란다.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를 인선함에 있어 시민사회, 인권단체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

2001년 8월 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인권단체는 이런 인권위원을 원한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1] 추천 인사 명단

34개 인권 및 인권관련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올 11월에 신설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다음 10분을 추천하고 이를 공개서한 형태로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및 각 정당 총재(대표), 그리고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1.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2.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3. **홍근수** (향린교회 담임목사.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공동의장)
4. **문정현** (신부.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매의집' 원장. 군산미군기지우리찾기시민모임 상임대표)
5. **문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6. **김철준**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7.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 노동부 건강진단심의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원진직업병재단 이사)
8.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
9. **이금연** (국제 가톨릭 형제회 회원. 안양 진진상복지관 관장. 이주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10. **최 민**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의 꿈 너머' 이사장. 한국DPI 이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인권단체로서 변호사 및 여성운동가를 인선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조계와 여성운동계는 인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이 자리를 빌어 법조계와 여성운동계에 대하여 각각 훌륭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적극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만 각각 부산과 수원에서 눈부신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와 김철준 변호사 경우 인권운동가로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연대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한다.

[2] 추천 배경

3년 여 동안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단체로서 우리는 11월에 설립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힘없는 국민의 큰 희망을 담고 출범하게 된다. 이 것이 내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결국 '인권의 간판을 내건 사기극'으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기 단계에서 올바르게 뼈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인권위원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특히 위원회의 조사권한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법안만큼 이 결함을 안고 이것을 보완해 나가야 할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과 균형감각 그리고 올곧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요구이다.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 후 2개월 이상 지난 지금, 우리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인권위원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의가 첫판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특징짓는 오랜 악습, 즉 '밀실행정'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방식이 새 시대를 맞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권, 국가기관, 기득권 세력의 '나뉘먹기'식 인선으로 과거 '인권'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인사가 인권위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에 우리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

지난 7월 19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그 창립대회 자리에서 인권위원 인선과정을 공명正大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인권위원회 설립을 향한 제 2단계 활동으로서 한국 인권운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추천된 분들이 실제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추천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인권위원 선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3] 추천 경과

- 7월 19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대회 직후부터 공개 추천에 관한 내부 논의가 시작되어 후보 모색과 자료 수집에 착수.

- 7월 24일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공개 추천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회부.

- 7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압도적 다수가 공개 추천에 찬성. 피 추천자 후보 20명의 명단과 자료를 가지고 3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

(1) 인선을 다시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로 위임한다.

(2) 인선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에 인권과 관련된 일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그 활동이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과거에 도덕적인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바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린 채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결함을 실제 운영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추천을 대체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⑤ 일정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 인권단체로서 변호사 및 여성운동을 인선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조계와 여성운동계는 인선 대상에서 제외되 공개 추천을 위한 기자회견 시 법조계와 여성운동계에 각각 좋은 사람을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만 각각 부산과 수원에서 눈부신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와 김철준 변호사 경우 인권운동가로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연대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한다.

- 7월 30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20명의 후보자를 놓고 3시간 토론 끝에 10명을 선정.

- 8월 1일 대표자회의에서 인선 안을 추진.

[4] 추천 이유

10명의 피 추천인들은 7월 27일 '연대회의' 대표자회의가 결정한 다섯 가지 인선 기준을 충족한다. 모두가 높은 인권의식의 소유자라고 판단되며 현재 활발한 인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 오랜, 혹은 활발한 인권 옹호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새롭게 검증될 필요가 없는 인사들이라는 데 선정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해박한 법학 이론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5·18 특별법 제정운동, 안기부법 개악 반대운동, 과거청산 분야 인권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직을 3년 동안 수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권이 넘는 집필·발간할 정도로 인권이론에 밝으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신망 있는 원로 헌법학자이다. 오랫동안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한국 교회인권센터 실행이사,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현실참여도 활발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며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에 관한 많은 글을 쓴, 강직한 인사라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근수 목사는 90년대 이후 통일운동과 인권옹호운동, 특히 양심수문제와 민중생존권문제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그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반공이데올로기에 찌든 한국사회에서 그가 감행해온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은 운동사회의 존경을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다. 시대의 어려움을 몸으로 돌파하고 선도해 나가는 활동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정현 신부 역시 90년대 이후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인권옹호운동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천주교 사제라고 판단된다. 그 또한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으며 시대의 어려움을 몸으로 돌파하고 선도해 나가는 활동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작은자매의집' 원장으로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은 그의 인권적 감수성이 남다른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의 인권옹호활동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시국사건과 부산, 울산, 창원, 거제 지역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맡고 정력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군사정권과 맞서 투쟁한 경력도 만만치 않은 반면 현재 부산광역시와 관계를 맺고 전개하는 공익활동도 활발하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등 인권단체에의 참여도 돋보인다.

김철준 변호사는 수원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그 변호사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90년대 수원의 거의 모든 인권사건을 도맡아왔다. 치밀하고 부지런한 그의 성격으로 세 차례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순심 김명희 씨 등 가정폭력사건, 민병일 의문사 사건 등 수많은 억울한 인권사건에 성실하게 대하였고 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시대의 '호민관'이어야 할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길승 원장은 오랜 민주화운동과 박해를 넘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을 비롯하여 갖가지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에 앞장 서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그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사 및 고문사건에 헌신적으로 간여하면서 광범위한 노동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사업재해와 고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다.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은 '민가협' 창립회원이며 '민가협' 16년의 역사에서 최다·최장기 회장(상임의장)을 역임한 '양심수의 어머니'이다. 교도소 앞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의 현장에는 언제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사회의 인권유린을 꿰뚫어 보는 그의 지혜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데 선정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무엇보다도 귀한 여성 인권운동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

이금연 안양 전진상복지관 관장은 노동자로서 그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근로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상담, 교육 등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의 활동 영역은 청소년, 여성, 빈민, 이주노동자문제에 걸쳐 있다.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 교육 등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이 평가되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부회장과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반 차별과 복지활동을 펼쳐왔다. 역시 여성 인권운동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

최 민 '장애인의 꿈 너머' 이사장은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서 현재 가장 활동적인 장애인 운동가로 꼽히며 장애인의 인권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제한의회 그룹' 등 창립에 참여한 대표적인 운동가였던 그는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 있는 감각을 지니는 인권운동가라는 점이 평가되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그 제정과정에 정통해 있는 점이 그가 추천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5] 앞으로의 행동계획

(1)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및 각 정당 총재(대표) 그리고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10명 중에서 인권위원을 추

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기자회견 직후)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한국 여성단체연합'에 각각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3)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각 정당 총재(대표), 최종영 대법원장 면담 추진. ('연대회의'에서 추천하는 10명 중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구. '나눠먹기'식 추천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

(4) 인권위원 선정과정을 공론화 시킬 것을 요구하는 홍보활동.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조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판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기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